

교양 교과목 대체 인정 가이드라인

1. 교양 교과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체 인정이 불가합니다.
2. 신촌캠퍼스 교과목에 대한 대체 인정은 「미래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가능하며, 이 규정을 벗어나는 대체 인정은 불가합니다.

미래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제8조(교과목 이수))

- ① 제1전공의 전공과목과 교양과목 (학부기초, 학부필수, 학부선택, 계열기초, 공통기초, 교양기초, 필수교양, 대학교양, 전공탐색 과목 등)은 미래캠퍼스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열 학기를 이용하여 서울캠퍼스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국문 또는 영문)과 학점이 동일한 교양과목(학부기초, 학부필수, 학부선택, 계열기초, 공통기초, 교양기초, 필수교양, 대학교양, 전공탐색 과목 등) 및 사전에 허가받은 전공과목은 인정한다. 단, 기독교의 이해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동일 학점)은 모두 미래캠퍼스 해당 영역으로 인정한다.
3. 최종적으로 소속 학과(부)에서 판단 후, 소속 학과(부)는 「교양 교과목 대체 인정 승인서」를 작성(「교양 교과목 대체 인정 요청서」 첨부)하여 RC융합대학 및 미래교무처에 공문으로 승인 사항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양 교과목 대체 인정 요청서

단과대학				소속 학과(부)													
학번				이름				학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table><tr><td>개인정보 처리목적</td><td>개인정보 항목</td><td>수집 근거</td></tr><tr><td>학사 업무</td><td>단과대학, 소속 학과(부), 학번, 이름, 학년</td><td>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td></tr></table>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학사 업무	단과대학, 소속 학과(부), 학번, 이름, 학년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학사 업무	단과대학, 소속 학과(부), 학번, 이름, 학년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요청 내용																	
이수 과목						대체 인정 요청 과목											
이수학기	종별	학정번호	학점	교과목명	성적	종별	학정번호	학점	교과목명	담당교수							
00-0학기	대교	YHA1234	3	가나다라	A+	대교	YHA1234	3	가나다라	000							
사유(자세하게 작성해 주세요) EX) 해당 수업을 대체 인정을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졸업 등)																	
■ 교양 교과목 대체 인정 요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교양 교과목 대체 인정 요청을 통해 졸업요건 외 교과목을 대체 인정 받는 경우 교양 교과목 대체 인정 요청서 접수/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 대체 인정 요청 과목 담당교수 부재로 학과(부)장 대리 확인 시, 사유 기재																	

위와 같이 교양 교과목 대체 인정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요청인: ○○○ (인)

*본인 서명이 없으면 요청서는 무효입니다.

대체 인정 요청 과목 담당교수: (직급) ○○○ (인)